

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-592호

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0월 21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국가 간 협력 추진에 따라 특허출원시 미생물기탁을 인정하는 기탁기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,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고려하여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품목을 포함시키는 한편,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을 외국 제도와 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.

2. 주요내용

가. 미생물 기탁기관 인정 대상 확대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)

- 1) 부다페스트조약(조약에 따른 국제기탁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하는 경우 체약국 간에 미생물 관련 특허를 자유롭게 출원할 수 있는 내용의 조약)에 가입하지 않은 대만과 양국의 미생물기탁기관을 상호 인정해주는 내용의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- 2)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에 대해 대한민국과 동일한 조건의 절차를 인정하기로 합의한 국가에서 지정한 미생물기탁기관을 국내 특허출원시 인정하는 기탁기관에 추가하고, 해당 기탁기관에서 미생물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함.

- 3) 부다페스트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대한
민국과 상대국이 지정한 미생물기탁기관을 상호 인정하게 됨에 따
라 상대 국가에 미생물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출원인에게 미생물기
탁 절차를 간편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나.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의 대상 및 운영규정 정비(안 제
7조)

- 1) 마약류 의약품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과 관련한 소송에서 마약류
의약품을 존속기간 연장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라
는 판결(특허법원 2019. 7. 5. 선고 2018허2250 및 2018허2267)이 확
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, 허가등에 따른 특허
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안정성을 위하여 운영중인 행정규칙(특허
청고시)을 법령에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- 2)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연장 대상에 「마약류 관리법」에
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추가하고, 존속
기간연장 대상발명의 불실시기간 산정 절차 및 심사 기준 등을 특허
청장에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함.
- 3)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허
용하게 됨에 따라 헌법의 평등원칙을 준수하고, 허가등에 따른 특허
권 존속기간 연장의 기간 산정 등에 대한 행정규칙 운영의 정당성이
부여될 것으로 기대됨.

다.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 규정 정비(안 제7조의2)

- 1) 해외 주요국 대비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(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시 제외되는 기간)을 좁게 규정함에 따라 국제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.
- 2) 현재 거절결정 후 재심사청구까지 기간만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으로 산정하던 것을 재심사에 소요되는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,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오역정정서가 심사청구일부터 8개월이 지난 후 제출되면 초과된 기간을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으로 산정하도록 함.
- 3)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을 주요국과 유사하게 조정함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국가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.

3. 의견제출

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보내실 곳

○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: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(둔산동)

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(우 35208)

전화 : (042)481-5399, Fax : (042)472-4743

전자우편 : maro87@korea.kr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(www.kipo.go.kr) “입법예고”를 참고하시거나,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(전화 042-481-539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